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-1521호

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03호(2009.12.10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0호(2010.06.03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33호(2010.09.2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64호(2011.09.1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86호(2013.06.20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25호(2013.07.1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84호(2014.05.1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25호(2014.12.1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2호(2016.04.1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9호(2017.02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3호(2017.06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37호(2017.11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3호(2017.12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4호(2018.02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98호(2018.06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54호(2019.02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6호(2019.03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30호(2019.04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16호(2020.05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76호(2020.09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36호(2023. 10. 12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-97호(2014. 9. 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8-116호(2018. 12. 20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0-156호(2020. 10. 29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-15호(2021. 1. 28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,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,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, 조합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(제목, 내용, 주소, 성명(날인)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8월 22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가. 공람기간: 2024. 8. 22. ~ 2024. 9. 5. (공고일 포함 15일간)

나. 공람장소

(1)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(☎02-820-9332)

(2)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2-813-0705)

다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

(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(2)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

- 위치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-220일대

- 면적: 72,822.0㎡

(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최윤정)

- 주소: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143, 205호(상도동, 창건빌딩)

(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98개월

(5)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14년 9월 1일

(6) 변경신청 사유: 정비사업 시행기간 및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·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36호, 2023.10.12.)에 따른 변경 등

(7) 변경내역

(가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
- 지정: 사업시행계획인가일(2014.9.1.)로부터 126개월

- 변경: 사업시행계획인가일(2014.9.1.)로부터 198개월

(나) 사업시행자의 성명

- 지정: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호영

- 변경: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윤정

(다)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: 공원면적 감소, 공공시설 면적 증가

- 지정: 도로 8,056㎡, 공원 4,656㎡, 문화시설 5,571㎡, 공공시설 284㎡

- 변경: 도로 8,056㎡, 공원 4,350㎡, 문화시설 5,571㎡, 공공시설 590㎡

(라) 건축계획 변경: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용적률 상향, 평형변경 등

- 지정: 용적률 267.94%(완화가능 용적률 272.33%)

- 변경: 용적률 272.32%(완화가능 용적률 272.33%)

라. 의견서 제출: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서면 작성·제출

마. 관계도서: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

바. 기타사항: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,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(부서)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